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549-01

들녘경영체 설명서

들녘경영체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





들녘경영체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

들녘경영체 설명서

CONTENTS

1	들녘경영체란 무엇인가요?	05
	[1-1] “들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06
	[1-2] “농업경영체”란 무엇인가요?	07
	[1-3] “들녘경영체”란 무엇인가요?	08
2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무엇인가요?	11
	[2-1]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목적과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12
	[2-2]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2
	[2-3]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별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13
	[2-4]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지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14
	[2-5]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지원기준, 사업규모 등은 어떻게 되나요?	17
3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
	[3-1]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
	[3-2] 농업법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20
	[3-3] 들녘경영체의 구성원은 어떻게 모이나요?	27
	[3-4] 들녘경영체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28



4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몇 단계로 구분되나요?	31
	[4-1] 지원사업 내용에 따른 단계 구분	32
	[4-2] 들녘경영체 조직 발전단계별 구분	33
5	지역맞춤형 들녘경영체사업이란 무엇인가요?	35
	[5-1] 들녘경영체육성 유형 소개	36
	[5-2] 들녘경영체육성 유형별 모델	37
6	들녘경영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
	[6-1] 들녘경영체는 조직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44
	[6-2] 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50
	별첨	53
	〈별첨 1〉 들녘경영체가 6차산업화를 추진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무엇인가?	54
	〈별첨 2〉 농산물 생산비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56



들녘경영체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

1

들녘경영체란 무엇인가요?



1

들녘경영체란 무엇인가요?

[1-1] “들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들녘은 들이 펼쳐진 곳, 들판입니다. 가을철 수확기가 다가오면 우리들은 ‘황금빛 들녘’의 풍요로움을 보고 감탄합니다. 마을이 사람들이 정주하는 ‘휴식의 공간’이라면, 들녘은 농업인의 일터, ‘생산의 공간’인 농지입니다.

들녘은 크든 작든 어디에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논 면적이 50ha 이상 단지화된 들녘은 전국 3천여 개소, 전체면적이 43만ha로 확인됐습니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25명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모여 50ha(1km×500m) 이상의 들녘을 대상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간지역이나 중산간지역에서 1개의 집단화된 들녘이 50ha 이하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2015년부터는 이러한 지역의 경우 공동영농이 가능한 인근 들녘과 연계하여 50ha 이상의 농지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들녘” 구성 주요사례



1 평야지대 들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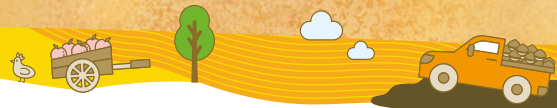
평야지역 들녘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2 중산간지대 들녘

인근의 공동영농이 가능한 들녘 2곳을 합하여 하나의 들녘경영체가 운영하는 들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3 산간지대 들녘

인근의 공동영농이 가능한 들녘 3곳 이상을 합하여 하나의 들녘경영체가 운영하는 들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2] “농업경영체”란 무엇인가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는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농업경영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3 ‘농업인’ 정의 관련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농업인 확인 신청 등과 관련 세부사항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5호) 참고

[1-3] “들녘경영체”란 무엇인가요?

가. “들녘경영체” 정의

들녘경영체육성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들녘경영체”는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농업경영체입니다.

소재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들녘경영체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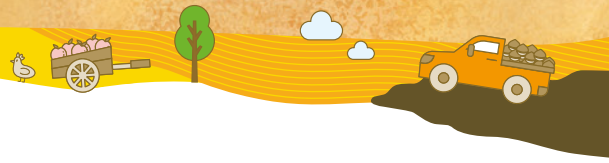
나. “들녘경영체”의 필요성

한국농업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FTA체제의 확대로 농산물의 수입자유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고, 쌀 관세화의 도입으로 우리 쌀의 수출길이 확대되는 한편 외국쌀과 경쟁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농업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우리 먹거리를 누가 계속 생산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해 농지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아져 농가소득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고 농촌의 작업현장도 소수의 기계화 대농층과 대다수의 영세·소농층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농업은 농산물 생산을 담당할 경쟁력을 갖춘 주체를 육성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농산물의 품질확보와 생산비용의 절감 및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더 나아가 한국농업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고령의 영세·소농과 소수의 대농의 구조에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농가들 각각을 개별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과 성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들녘을 중심으로 규모화된 생산조직, 영세·고령농을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참여하여, 농지면적의



규모화 및 단지화를 통해 농업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즉, 들녘경영체 같은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 노동력에 특성과 전문적 역할을 부여하고, 농지를 규모화·단지화하여 중대형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농식품의 가공, 판매, 체험, 관광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농촌에서 조직화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두레나 품앗이 같은 공동영농 전통이 오래도록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중대형 농기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대부분 마을단위에서 2~3개 농작업반을 구성하여 이앙, 퇴비 만들기, 수확작업, 용배수로 청소 등을 공동으로 작업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두레 같은 영농전통을 되살려 젊은 노동력이 부족한 농업 현실에 대응하고자 ‘들녘’을 단위로 하여 공동농업경영체를 운영하여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타개할 수 있습니다.

[사례] 일본의 “집락영농”

우리나라의 들녘경영체와 유사한 조직체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바로 ‘집락영농(集落営農)’입니다. 집락(集落)은 우리나라의 마을과 비슷한 단위입니다. ‘2005년 일본 농림업센서스’의 정의에 따르면 집락은 자연발생적인 지역사회로, 家와 家가 지연적·혈연적으로 결부되어 각종의 집단과 사회관계를 형성해온 사회생활의 기초적인 단위이며, 일본의 시정촌(市町村)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사회를 “농업집락”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집락영농은 집락을 단위로 농업생산과정에서 일부 혹은 전부를 합의하여 공동 및 단일화하여 실시하는 영농으로, 현재 일본의 “경영소득안정대책”이나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생산조정)” 등의 주요 농업정책 지원대상자로 정하고, 농업정책의 주요 파트너로서 중시되고 있습니다.

집락영농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됩니다. 첫째, 농업용 기계를 집락에서 공동소유하고 집락마다 종합적인 영농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여 집락영농에 참가하는 개별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둘째, 집락영농에 참가하는 농가들이 운영자조직(Operator)을 운영하여 공동소유의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을 위탁받습니다. 셋째, 집락의 농지 전체를 하나의 농장으로 간주하고 집락 내의 영농을 일괄하여 관리·운영합니다. 넷째, 지역의 의욕 있는 담당자가 농용지의 집적이나 농작업의 위탁 등을 진행하도록 하여 집락마다 정리된 영농계획서에 따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영농을 구현합니다. 다섯째, 집락영농에 참가하는 각 농가들이 공동 출역(出役)하여 농작업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집락 내에서 재배농지의 단지화 같은 토지이용 조정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일본의 집락영농은 2016년 2월, 현재 15,135개소에 이릅니다. 일본에서는 집락의 약 11%가 집락영농을 조직하고 있으며, 집락영농조직 중에서 4,217개소(집락영농의 27.9%)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락영농의 주요 운영형태는 농산물 등의 생산·판매가 75.5%, 농기계의 공동소유·이용이 79.6%, 방제·수확 등의 농작업 수탁이 47.9%, 농가의 출역에 의한 공동 농작업이 49.0%, 재배지의 단지화 같은 집락 내 토지이용조정이 57.1%, 집락 내 영농의 일괄관리·운영이 27.7%로 확인되어 이 사업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녘경영체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

2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무엇인가요?



2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무엇인가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들녘경영체육성 사업시행지침]을 풀이하였습니다.

[2-1]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목적과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목적

50ha 이상 들녘을 규모화·조직화하고 공동경영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지, 인력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근거법령

들녘경영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4 근거법령 세부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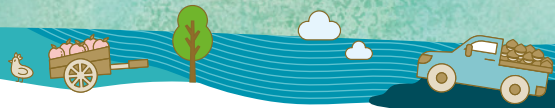
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시행기관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은 지자체(시·군 및 시·도)에서 사업수행 및 관리를 맡아 사업신청·접수,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점검까지 사업전반을 수행합니다.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2]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가.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91조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입니다.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사업내용별 사업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직화 촉진 지원'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 RPC(Rice Processing Complex)입니다. 특히 농업법인과 농협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있으며, 계약재배만 하고 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들녘경영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단, 농업법인으로 연간 벼 2,000톤 이상 가공능력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 보유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하고, 들녘경영체 생산물량의 80% 이상을 수매하여, 그 물량의 50% 이상을 품종표시 자체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 농업법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 [3-2] 농업법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다각화 지원'은 조직화 촉진 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가 지원대상입니다.
 -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들녘경영체, 쌀 전업농, RPC 임직원 등입니다.
- 들녘경영체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 조직을 구성하고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농업경영체여야 합니다.
 - 소재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 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들녘경영체로 인정됩니다.

[2-3]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별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지원사업은 조직화 촉진 지원, 사업 다각화 지원,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총 3가지가 있으며, 사업별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직화 촉진 지원

조직화 촉진 지원 사업은 교육·컨설팅 지원, 시설·장비 지원 2가지로 구분되고 지원 내용에 따라 사업대상의 선정방법이 달라집니다.

(1) 교육·컨설팅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자체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평가시 경영 운영실태가 우수한 기존 들녘경영체와 신규지원 들녘경영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설·장비 지원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교육·컨설팅 지원을 1회 이상 받은 들녘경영체로 제한됩니다.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들녘경영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운영실태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서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은 조직화 촉진 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조직화 촉진을 지원받은 들녘경영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서류·현장·발표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사업시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 하에 별도의 교육훈련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2-4]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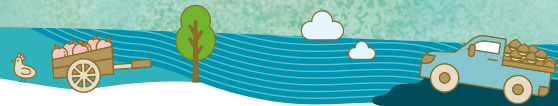
가. 조직화 촉진 지원

(1)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은 들녘경영체를 구성하는 초기에 조직화를 촉진하고 경영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다음 3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 ① 교육비는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및 인사·회계 관련 분야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② 컨설팅비는 전작·축산 연계 등 작부 체계, 직파재배, 파종상 비료 등 비용절감, 논콩 등 타작물 재배, 가공용벼 재배, 밀 등 답리작 재배 등의 재배기술,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들녘경영체 조직관리, 생산비 절감,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의 컨설팅 항목에 사용됩니다.
- ③ 운영비는 들녘경영체의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임차료, 유류비, 수리비 등 항목에 사용됩니다. 운영비는 교육·컨설팅 지원금액의 30%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컨설팅 지원 총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6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녘경영체 교육(생산자 역량강화교육)



선진지 견학(국립식량과학원 벼 포장 견학)

(2) 「시설·장비 지원」 사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들녘경영체의 토지를 제외한 '생산과정'에서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단, 공동육묘장 혹은 광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가 없는 경영체는 공동육묘장 및 방제기를 우선 신청하도록 지원합니다.

직파재배, 논 타작물 재배, 동계 조사료 재배 등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직파 파종기, 콩 전용 콤바인, 조사료(건초)생산 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단,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 현장점검 등으로 최종결정하고 과잉보유 시설·장비의 추가지원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육묘장 지원(공동육묘장 전면(좌), 육묘장 내부(우))



광역방제기 지원(광역살포기(좌), 무인헬기 방제(우))

나. 사업다각화 지원

(1) 「사업다각화 지원」에 대한 이해

사업다각화 지원은 들녘 단위의 기존의 밥쌀 생산에서 그 외 품목의 생산과 가공을 포함하는 타산업 부문까지로 공동경영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등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쌀 생산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들녘경영체를 규모화·조직화하고, 공동경영으로 발생하는 유희자원이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의 벼 중심의 농업 소득구조를 다원화하고, 이를 통해 참여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은 타작물 재배 및 타산업 분야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며 기존 쌀 중심의 규모화 지원은 최소화하여, 세 가지 영역, 즉 ① 타작물·이모작 재배 확대 ② 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③ 체험·관광 연계 부문으로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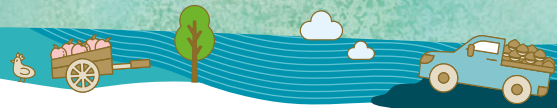
(2)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내용

사업다각화 지원의 사업비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 컨설팅 비용은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필요한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등에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사업다각화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 정비·관리, 중장기 사업계획, 소득 창출, 일자리 연계·창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단,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최대 1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둘째, 기반정비 활용비용으로 쌀 중심에서 이모작 확대 및 타작물 재배로의 다각화를 위한 배수개선, 암거배수 등 생산기반 설비를 정비하는데 사용됩니다.

셋째, 시설·장비 구입비용으로 경영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판매, 체험·관광과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 생산품목 변화와 사업규모 확대에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타작물·이모작 생산 및 6차 산업화를 위한 가공·유통 설비는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의 한도 없이 지원합니다. 일반 밥쌀용 쌀 이외에 벼(찰벼, 유색미)를 활용한 6차 산업화를 포함하며, 쌀을 활용한 단순가공 이외 가공사업(쌀가루, 떡류 제조)도 비용 지원에 포함됩니다.
- 쌀 관련 생산·유통 기반 구축은 기존의 시설·장비 지원 수준,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 흐름, 규모화 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30% 범위 이내로 지원합니다.
-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 중 최대 30% 범위 이내로 지원하고 숙박시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은 급변하는 쌀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쌀 전업농 등 쌀 선도경영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교육훈련사업 지원금은 기관 운영비와 교육 훈련비,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업관리기관 운영비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공모 및 선정 심사, 과정별 운영점검, 성과평가, 사업비 집행·정산 등의 제경비로 사용합니다. 교육훈련비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사업관리기관 운영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의 내용에 따라 추진업체를 선정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는데 사용합니다.

[2-5]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지원기준, 사업규모 등은 어떻게 되나요?

가. 조직화 촉진 지원

조직화 촉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원기준

- 교육·컨설팅 지원: 들녘경영체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 100ha 미만 1천만원 이내, 100ha 이상~200ha 미만 2천만원 이내, 200ha 이상~400ha 미만 3천만원 이내, 400ha 이상 4천만원 이내
-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 400ha 미만 2억 원 이내, 400ha 이상~600ha 미만 3억 원 이내, 600ha 이상 4억 원 이내

② 사업규모: 교육·컨설팅 80개소 내외, 시설·장비 35개소 내외

-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③ 지원형태 및 지원율은 국고 보조 50%, 지방비 보조 40%, 자부담 10%입니다.

나.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사업규모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지원기준은 개소당 전체 사업비 10억원 또는 20억원 이내로 사업기간은 2년(10억원) 또는 3년(20억원)으로 분할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2년은 매년 50%, 3년의 경우는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비율로 지원하되 예산집행 등 상황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② 사업규모는 사업내용에 따라 개소수 조정이 가능하며 신규 15개소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③ 지원형태 및 지원율은 국고 보조 40%, 지방비 보조 40%, 자부담 20%입니다.

다.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은 국내교육과 국외교육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 국내 교육

- ① 사업규모는 사업 신청자에 따라 지원대상수 조정 가능하며 5,000명 내외입니다.
- ② 지원형태 및 지원율은 국고보조 50%, 자부담이 50%입니다.

(2) 국외 훈련

- ① 사업규모는 사업 신청자에 따라 지원대상수 조정 가능하며 40명 내외입니다.
- ②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50%, 자부담이 50%입니다.



해외연수 일본연수관광 2016년 7월 3~8일 일본 아기다현과 아오모리현

3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1]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직화 촉진 지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업대상자 조건을 갖춘 농업법인, 농협, 정부지원 RPC가 사업추진 대상입니다. 그리고 조직화 촉진 지원의 수혜를 입어 들녘경영체로 인정·선정된 농업경영체는 사업다각화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사업대상자가 되기 위한 최소자격이므로, 농가에서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3-2] 농업법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통합검색 검색창에 “농업법인 관련 안내서”를 입력하고 “농업법인 관련 업무안내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농업법인의 기본적인 이해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거법령, 법인성격, 설립주체에 대한 요건 등의 기본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근거법령

농업법인 설립 근거법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농업법인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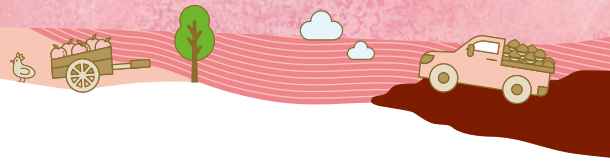
농업법인의 성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규정하고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3) 법인 설립주체

농업법인의 설립주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발기인을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합니다(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주식회사 1인 이상).

(4) 사업범위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5) 의결권

농업법인의 의결권은 법인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1인 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기본성격은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르는 의결권이 인정됩니다.

참고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법인 설립 등 관련 규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5 관련 법령 세부내용(계속)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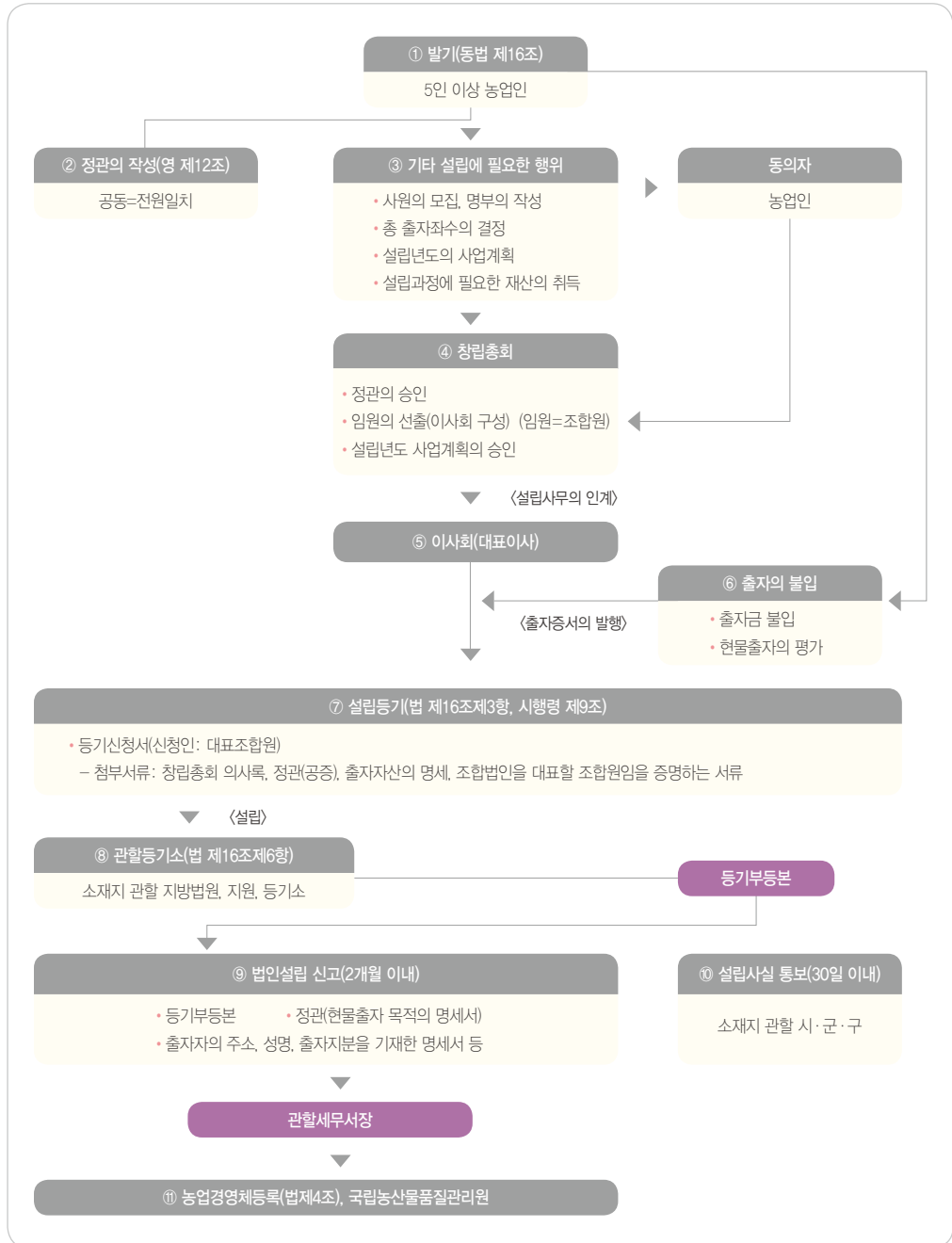
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정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각각의 특징은 아래 표로 정리됩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적합한 법인형태를 설립하기 위해 다음의 특징들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결원 시, 1년 이내에 총원(미총원 시 해산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 *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동법 시행령 제19조)
농지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제3호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법인 수: 11,599개 법인당 평균 매출액: 1,058백만원 매출액 10억 이상 법인 수: 2,050개 법인당 평균 출자액: 216백만원 * 출처: 2014 기준 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통계청, 20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법인 수: 4,883개 법인당 평균 매출액: 2,545백만원 매출액 10억 이상 법인 수: 1,688개 법인당 평균 출자액: 426백만원 * 출처: 2014 기준 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통계청, 20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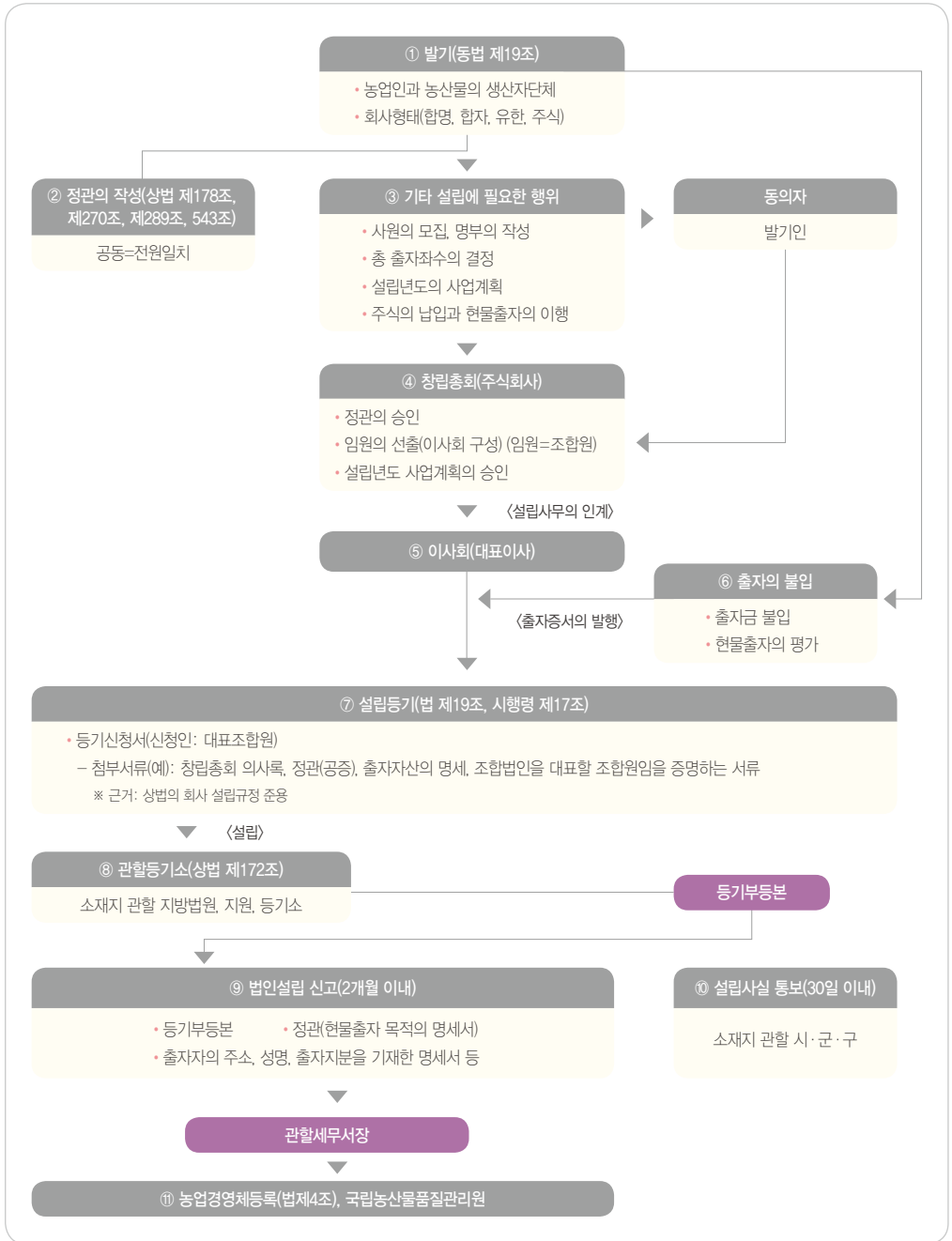
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순서도 참조)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순서도 참조)



라. 농업법인 설립·운영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

• 농업 법인 관련 기관

구분	홈페이지	대표전화	비고
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054-429-4000	농업인 확인서 발급, 설립 후 농업경영체 등록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www.kaff.or.kr	02-3401-6543	
농업인교류센터	www.kafcc.net	070-7165-001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운영 (법률, 세무 자문)
aT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www.foodbiz.or.kr	1566-2272	기술, 경영, 수출 등 컨설팅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www.karlca.or.kr	031-292-4911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www.aceo.or.kr	02-6300-8378	법인관련 사업, 교육운영, 제도개선, 민원, 가입안내 등

• 지방법원 등기소: 법인 등기 업무

구분	홈페이지	대표전화	비고
서울지방법원등기소	www.seoul.scourt.go.kr	02-530-1114	법인 등기업무
서울동부지방법원등기소	www.sldongbu.scourt.go.kr	02-2204-2114	법인 등기업무
서울남부지방법원등기소	www.slnambu.scourt.go.kr	02-2192-1114	법인 등기업무
서울북부지방법원등기소	www.slbukbu.scourt.go.kr	02-910-3114	법인 등기업무
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소	www.slseobu.scourt.go.kr	02-3271-1114	법인 등기업무
의정부지방법원등기소	www.uijeongbu.scourt.go.kr	031-828-0114	법인 등기업무
인천지방법원등기소	www.incheon.scourt.go.kr	032-860-1113~4	법인 등기업무
수원지방법원등기소	www.suwon.scourt.go.kr	031-210-1114	법인 등기업무
춘천지방법원등기소	www.chuncheon.scourt.go.kr	033-259-9000	법인 등기업무
대전지방법원등기소	www.daejeon.scourt.go.kr	042-470-1114	법인 등기업무
청주지방법원등기소	www.cheongju.scourt.go.kr	043-249-7114~5	법인 등기업무
대구지방법원등기소	www.daegu.scourt.go.kr	053-757-6600	법인 등기업무
부산지방법원등기소	www.busan.scourt.go.kr	051-590-1114	법인 등기업무
울산지방법원등기소	www.ulsan.scourt.go.kr	052-216-8000	법인 등기업무
창원지방법원등기소	www.changwon.scourt.go.kr	055-266-2200	법인 등기업무
광주지방법원등기소	www.gwangju.scourt.go.kr	062-239-1114	법인 등기업무
전주지방법원등기소	www.jeonju.scourt.go.kr	063-259-5400	법인 등기업무
제주지방법원등기소	www.jeju.scourt.go.kr	064-729-2000	법인 등기업무



[3-3] 들녘경영체의 구성원은 어떻게 모이나요?

들녘경영체는 두 범주의 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조합원과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서 농업법인에 출자하지 않고 들녘경영체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육묘, 공동방제, 공동수매 등의 작업에 참여하는 준조합원입니다.

준조합원들은 대체로 영세·고령농으로 수익이 적어 출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수익이 증대하면 농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인입니다. 농업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준조합원이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들녘단위로 공동경영체의 성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 들녘경영체 조합원 구성의 두 가지 방안

(1) 사람을 중심으로

일정한 들녘 범위 내에서 들녘경영체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농업법인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형태의 장점은 소수의 농업인들이 모여 조직화하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기 매우 수월하고, 소수의 인원이 뜻을 모아 함께 하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조직화되기 때문에 농지가 분산된 경우가 많아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고, 출자하지 않은 영세·고령농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쌀전업농 중심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된 들녘경영체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2) 농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들녘 범위에 포함된 농업인 모두가 출자하여 농업법인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들녘경영체를 조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들녘 내 모든 농업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농지의 단지화가 가능하고 농기계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들녘 전체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을 달성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농업법인 설립 시 많은 농업인을 조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면 그만큼 의견 일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조직운영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들녘경영체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농업인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각의 대표성을 갖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시행해야 합니다.

나. 들녘경영체 조합원 구성의 바람직한 방안

제1단계에서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장년층이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들녘의 준조합원들과 함께 들녘경영체를 구성하여 교육·컨설팅 지원에 선정됩니다.

제2단계에서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통해 준조합원들에게 들녘경영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일부를 환원하면서 이들이 농업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조합원수를 확대합니다.

제3단계에서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시설·장비 지원사업과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구성원에게 환원함으로써 들녘 내 모든 농업인들이 농업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들녘경영체 준조합원 구성방안

들녘경영체 준조합원에 가입된 농업인들은 들녘경영체의 운영진이 추진하는 공동육묘, 공동방제, 공동수매와 사업다각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쌀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비용절감, 판매효율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참여를 통하여 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 외 소득 등의 증대로 전체농가의 농가소득증대로 기대됩니다.

[3-4] 들녘경영체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농업경영체는 농협과 농협·민간 RPC를 통한 기존의 계약재배, 공동육묘, 공동방제 및 공동수매 등으로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참여시 농업경영체의 역할과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농업법인의 중심축인 임원진

들녘경영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농업법인 설립 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출자를 한 대표와 이사·감사입니다. 임원진들은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추진하고 큰 방향과 의사를 결정하는 등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들녘경영체에서 창출된 이익에서 출자한 부문만큼을 배당을 받습니다.

나. 농업법인에 출자한 조합원

농업법인에 출자한 일반 조합원의 경우, 들녘경영체 조직체계에 직접 참여하고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들녘경영체에서 창출된 이익을 출자한 부문만큼 배당을 받습니다. 공동방제, 공동육묘, 공동출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 들녘경영체 사업에 참여하는 준조합원

준조합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영세·고령농이 많은데 준회원의 자격이지만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은 농작업을 규모화하고, 이를 통해 육묘비와 방제비 등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의 농지를 들녘경영체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논 이모작이나 타작물 재배를 위탁한다면, 기존의 농업보다 더 큰 소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 경북 상주시 아자개 영농조합법인

상주시 사벌면의 쌀 전문농가들은 지난 2005년 논 250ha에 조합원 75명을 시작으로 '아자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조합원 132명, 자본금 8억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고, 2016년에는 조합원 174명, 자본금 1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아자개 영농조합법인은 1구좌 당 백만원이고 최저구좌 하한은 1구좌, 최대구좌 상한은 20구좌(2천만 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자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수와 자본금 증가는 쌀 재배관리와 가공관리(소형 RPC 법인 소유)를 철저하게 하여 GAP 인증 쌀, 친환경 인증 쌀, 찰쌀 등의 생산물을 체계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였고,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환원한 덕분입니다.

2013. 12월 기준, 조합원 구성은 평균연령 62.4세로 60대 이상의 조합원이 전체의 58.4%이며 연령과 관계없이 대부분 6~7구좌, 즉 평균 645만원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구분	조합원수		주식수		평균주식액 (천원)	평균연령 (세)
	조합원수	비율	주식수	비율		
40대 이하	11	8.3%	66	7.8%	6,000	45.0
50대	44	33.3%	338	39.7%	7,682	56.1
60대	43	32.6%	236	27.7%	5,488	64.1
70대 이상	34	25.8%	211	24.8%	6,206	74.2
총 합계	132	100.0%	851	100.0%	6,447	62.4

주: 아자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35~81세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들녘경영체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

4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몇 단계로 구분되나요?



4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몇 단계로 구분되나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내용과 들녘경영체 조직의 발전단계 정도에 따라 구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1] 지원사업 내용에 따른 단계 구분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내용에 따라 두 가지 단계, 즉 조직화 촉진 단계와 사업 다각화 추진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가. 조직화 촉진 단계

조직화 촉진 단계에서는 교육·컨설팅 지원과 시설·장비 지원, 두 가지로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통해 법인의 기반이 다져지는 단계입니다.

(1) 교육·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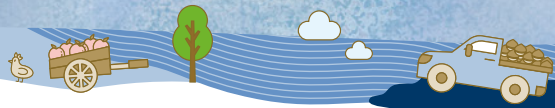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들녘 내 농업인들과 함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처음으로 신청한 경영체가 초기의 조직화를 추진합니다. 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기초 운영에 대한 이해, 들녘경영체 참여농가들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대한 이해, 국가의 쌀을 포함한 식량산업에 대한 이해 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들녘경영체의 교육·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세부내용으로는 재배기술 교육, 선진지 견학, 작부체계 및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생산비절감, 품질향상, 조직관리, 공동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위한 교육·자문입니다.

(2) 시설·장비 지원

이 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공동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직파재배를 위한 직파파종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벼 이모작의 맥류 및 조사료 재배 등을 활성화하고 논-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다각화 추진단계

사업다각화 지원은 조직화 촉진 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단계입니다. 사업다각화 지원은 들녘 단위의 공동경영 범위를 기존의 밥쌀 생산에서 쌀 이외 품목 생산과 가공 등 타작물과 타산업 부문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규모화로 발생한 유희자원과 지역별 특성을 활용하여 일반 벼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여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사업다각화 지원 단계에서는 기존 쌀 생산중심의 지원에서 타작물 재배 및 타산업 분야 확대 전환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세부 지원대상으로는 들녘경영체의 조직 정비·관리와 중장기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 쌀 중심에서 이모작으로의 확대와 타작물 재배를 위한 배수개선, 암거배수 등의 생산기반 정비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판매, 체험·관광으로의 연계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생산품목의 다변화와 사업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도 지원합니다.

[4-2] 들녘경영체 조직 발전단계별 구분

들녘경영체 조직을 단계별로 나누어 조직화 단계, 정착화 단계, 심화 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발전방안으로 조직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1) 조직화 단계

농업법인을 포함하여 농업인의 주도로 들녘경영체를 조직화하기 위해 공동농작업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추진합니다. 또한 공동생산 기반을 위한 공동육묘장, 방제기 등 기본 시설·장비를 구비합니다.

(2) 정착화 단계

참여농가 증가, 출하·판매 등 공동생산 범위 확대와 작부체계 개선 등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설·장비 도입사업 등의 지속추진으로 들녘경영체 운영이 내실화 되고 들녘경영체의 주요성과가 확대됩니다.

(3) 심화 단계

생산 외 가공 및 판매, 보유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 등 타산업과의 연계로 들녘경영체는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의 계기를 맞이하며, 자립 성장이 유도됩니다.

들녘경영체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

5

지역맞춤형 들녘경영체사업이란 무엇인가요?



5

지역맞춤형 들녘경영체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2009년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쌀 이외에도 답리작, 기타 작물 등 다양한 작물이 생산에 포함되면서 2012년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들녘경영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총 4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들녘경영체는 특색있는 발전방향에 따라 맞춤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1] 들녘경영체육성 유형 소개

(1) 쌀중심형 들녘경영체 유형

쌀 수급과잉의 문제와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여, 경영체를 고품질, 친환경, 가공·수출형 생산형으로 쌀 생산 경영체의 차별화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논 이모작 들녘경영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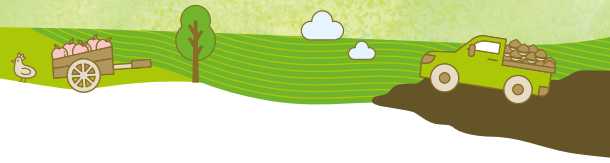
논 이모작 맥류, 조사료, 원예작물 등으로 구별됩니다. 논 이모작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해 이모작용 파종기, 건조·저장시설 등의 시설·장비와 용·배수시설 등의 기반정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3) 밭작물 결합형 들녘경영체 유형

논벼 혹은 타작물과 두류·서류, 채소·과수 등의 주산지를 연계하여 식량작물을 생산하도록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논 작부체계 개발·보급, 논밭 유회환을 위한 용·배수 시설의 정비 및 현대화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합니다.

(4) 6차 산업형 들녘경영체 유형

농산물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하기 위해 농산물과 농식품 생산·가공·체험·관광 등을 연계하는 6차산업 사업계획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컨설팅 비용, 체험·관광·가공·외식 시설 등의 관련 사업계획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2] 들녘경영체육성 유형별 모델

4가지 유형의 들녘경영체가 들녘에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모델			
쌀 중심형	논 이모작 확대형	논 + 밭작물 확대형	6차 산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쌀(GAP인증) 생산형 - 친환경쌀 생산형 - 가공용·수출용 쌀 생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 맥류 이모작형 (곡물자급률 향상) - 쌀 + 조사료 + 축산 결합형(경축순환) - 쌀 + 원예작물 생산형(농가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 밭 식량작물 생산형(농지이용률 증대) - 쌀 + 채소류 생산형 (채소 수급 안정) - 쌀 + 과수류 생산형 (과수 수급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종 + 체험·관광 결합형 - 경종 + 가공·외식 결합형

가. 쌀 중심형 들녘경영체 모델

최근 쌀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쌀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쌀 중심형 들녘경영체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고 2015년부터 513% 관세율로 쌀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농산업을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의 급감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단위면적당 수량증대로 쌀이 과잉공급되어 쌀 가격이 급속하게 하락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들녘경영체는 농가의 조직화,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외국쌀과의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 있는 쌀을 생산하고, 비용절감효과 등을 바탕으로 우리 쌀을 수출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 가공용 쌀의 수요에 맞는 가격대의 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쌀 산업분야를 생산의 주체로서 선도해야 합니다.

쌀 중심형 들녘경영체는 지역의 특성과 경영체의 추진사업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GAP인증 등을 받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들녘경영체입니다.

(2) 친환경 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쌀의 생산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들녘경영체입니다.

(3) 가공용 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우수한 가공용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쌀 가공업체에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우리 쌀 가공식품의 개발·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가공용 쌀 생산 전문 들녘경영체입니다.

(4) 수출용 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쌀 관세화 이후 수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목표로 저비용·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들녘경영체입니다.

나. 논 이모작 확대형 들녘경영체 모델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지이용률이 급속하게 저하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논 이용률이 105%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지이용률 저하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의 급속한 저하와 개별농가의 농업소득 정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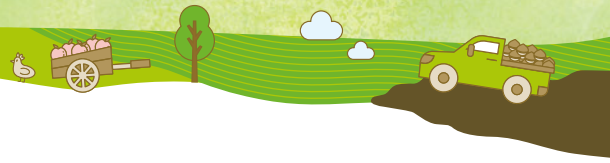
이에 농업인의 논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곡물자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논 이모작 맥류 재배, 사료작물 재배와 축산 결합, 원예작물 생산 등을 포함하여 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들녘경영체의 육성이 시급합니다. 논 이모작 확대형 들녘경영체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1) 쌀+맥류 이모작형

논벼 후작으로 맥류(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를 파종하여 들녘경영체에 참여하는 농가소득을 다양화하고, 식량 자급력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들녘 단위에서 논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농가와외의 협의를 통해 블록 로테이션으로 작업효율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군 단위 농지이용계획이 필요하며, 이 농지이용계획에서 들녘경영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의 기후조건, 토양조건 등을 고려한 논 농업의 안전한 작부체계에 대한 기술습득과 비용절감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수립이 중요합니다. 겉보리, 쌀보리, 밀 등의 맥(麥)종별 확실한 판매처 확보가 필요하며 판매조건 등을 고려한 맥류 가공업체와 연계한 판매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주변 '쌀+맥류 이모작형' 들녘경영체와의 연계도 필요합니다.

(2) 쌀+조사료+축산 결합형

조사료 생산가능지역에서 논과 밭의 이모작 작부체계를 개발하여 경축순환 도모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들녘경영체입니다. 즉 들녘을 평야지대, 중산간 지역, 논밭 혼합지역, 이모작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논에서 '논벼+조사료', 밭에서는 '식량작물+조사료' 등의 작부 체계를 개발합니다. 중산간지역이나 논밭 혼합지대에서 한우사육 등을 통한 경축순환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작부체계 기술을 개발하고 조사료의 생산을 늘리는 등 로컬 피드(Local Feed)의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축순환 농업형은 논과 밭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영세·소농층의 한우사육과의 연계를 통해 소득증대에 효과적입니다.

(3) 쌀+ 원예작물 생산형

논의 이모작으로 채소류, 특히 양념채소류 생산을 통해 소득 다양화를 도모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채소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들녘경영체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들녘경영체 내의 농가 혹은 주변 농가를 품목별로 조직화하여 생산·유통을 교육하고 지력증진을 위해 적절한 시비체계의 구축, 지역과 품목 특성에 맞는 작부체계를 개발, 품목별 블록 로테이션 운영이 필요합니다. 원예작물 품목이 지나치게 다양하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별로 채소작물을 통일하고 지역농협과 행정,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1차 가공과 체험을 통한 6차 산업화를 이루는 노력도 요구됩니다.

다. 논+밭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 모델

논+밭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는 벼와 밭작물 생산을 통해 소득 다양화와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밭 식량작물은 두류, 서류, 옥수수 등이 있으며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여 들녘을 규모화·단지화합니다. 또한 품목별 지력증진을 위해 적정 시비체계를 구축하고 품목별 블록 로테이션 등의 재배기술 체계를 개선합니다. 밭작물의 기계화를 추진하여 품질을 균일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확 후 정선·선별·저장 과정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논+밭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에는 다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1) 논+밭 식량작물 생산형

농지이용률 증대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 다양화와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유형입니다. 밭 식량작물은 두류, 서류, 옥수수 등이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여 규모화·단지화를 도모합니다. 품목별 지력증진을 위해 적정 시비체계를 구축하고 품목별 블록 로테이션 등 재배기술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화를 추진하여 균일한 품질을 달성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파종, 수확, 수확 후 정선, 선별, 저장에 이르는 과정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역농협, 원예농협, APC 등을 통해 안전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밭작물 사업과 연계된 가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밭작물의 1차 가공 등의 부가가치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쌀+채소류 생산형

이 모델은 채소류, 특히 양념채소의 주산지 이외의 지역에서 일정규모 양념채소를 재배하여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채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모델입니다. 채소 생산농가의 품목별 조직화와 생산단지화를 도모하여 적정 시비체계 구축, 재배기술 개선, 작부체계 개발하여 채소농가에 대한

생산유통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수확 후 저장시설과 1차 가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농협, 원예농협, APC 등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망과 수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후 6차 산업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3) 쌀+과수류 생산형

과수의 주산지 이외의 지역에서 일정규모의 과일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과수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모델입니다. 과일 주산지역에 있는 들녘경영체의 경우, 주변 과일 공동농업경영체와 연계를 통해 지역농협, 원예농협, APC 등과의 계약재배를 체결하여 수급조절이 가능합니다. 과일 주산지역이 아닌 지역의 들녘경영체는 자체 지역농협과 과일 계약재배를 통하여 일정부분 생산·유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과일 생산농가의 품목별 조직화와 생산 단지화 달성을 위해 적정시비체계 구축, 재배기술 개선, 생산유통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확 후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1차 가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6차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해 지역농협, 원예농협, APC 등과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망과 수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라. 6차 산업형 들녘경영체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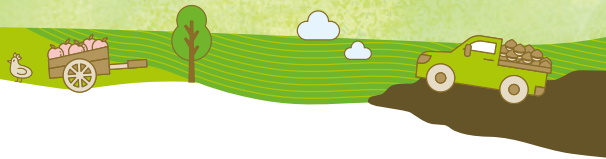
최근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가소득정체는 농업소득과 겸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의 정체에서 기인합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업소득의 증대,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증대로 겸업 소득의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사업 이외의 다양한 소득을 증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6차 산업형 들녘경영체 모델은 아래 2가지 모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 경종+가공·외식 결합형

이 모델은 농산물의 가공산업과 연계를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루는 들녘경영체 모델입니다.

(2) 경종+가공·외식+체험·관광 결합형

상기모델에 체험·관광을 결합하는 모델로 소비자 및 수요자와 함께 우리 농산물과 식품, 농촌의 생산과 정주공간으로써의 전통, 뛰어난 경관 등 문화 자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루는 들녘경영체 모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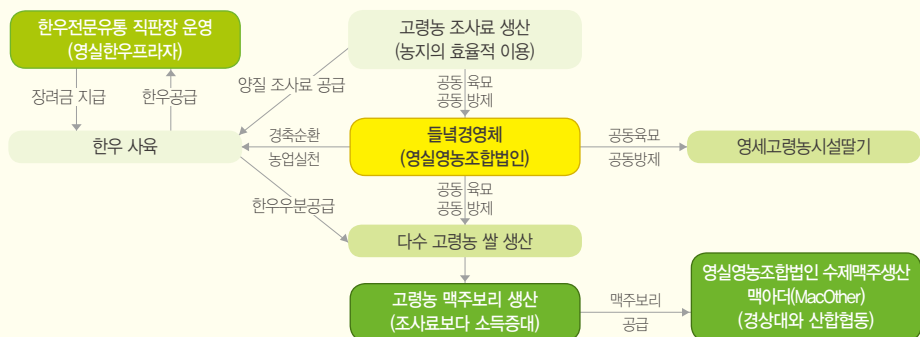
[사례] 논벼 이외 타작물 + 이모작 맥류: 우리미영농조합법인

2007년 50ha에 다섯 농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우리미영농조합법인은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 소재합니다. 우리미영농조합법인은 농작업 대행과 맥류, 조사료 생산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11년에는 정부의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을 계기로 논벼 대체작물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법인의 규모가 101ha에 30농가로 확대되어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논벼 대체 공재배+이모작 맥류재배 현황을 보면, 논공을 14.4ha에 단지화하여 재배하고, 이모작 겉보리 5.6ha, 밀 5.6ha 재배로 총 11.2ha에 재배합니다. 2015년 수익은 논공의 총 생산량이 52.2톤(10a당 362.5kg 생산으로 전국평균의 2배 수준), 밀 생산량이 28톤(10a당 500kg), 겉보리 생산량이 28톤(500kg)으로 기록했습니다. 논공의 판매가격(kg당 4,000원, 판매처 icoop)은 10a당 소득이 108만 4,000원(총수입 145만원, 경비비 366,463원)으로 쌀 소득의 1.9배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맥류는 총수익이 5억 9,150만원입니다. 밀은 40kg 당 42,000원에 김제농협에서, 겉보리는 40kg 당 42,500원에 김제원예농협에서 판매한 바 있습니다.

[사례] 사업다각화: 영실영농조합법인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소재한 영실영농조합법인은 2006년 쌀 재배농가와 한우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신안면 외고도리를 중심으로 약 180ha에 13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통해 광역살포기를 공동소유하고 공동육묘장을 개보수하여 공동육묘와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영실영농조합법인 한우농가 주도로 한우전문유통직판장인 '영실한우프라자' 설립하여 6차 산업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합은 "이농자립(以農自立) 이농애국(以農愛國) (농업을 통해서 자립하고 농업을 통해 애국한다)"을 영실영농조합법인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2015년에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지원센터와 함께 산학협력을 통해 수제맥주를 개발하여 2015년 12월 <MacOther>라는 수제맥주 1호점을 개점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업을 통해 고령농가의 맥주보리 재배를 통해 수익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영실영농조합법인 들녘경영체 주요 사업개요



들녘경영체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

6

들녘경영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들녘경영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1] 들녘경영체는 조직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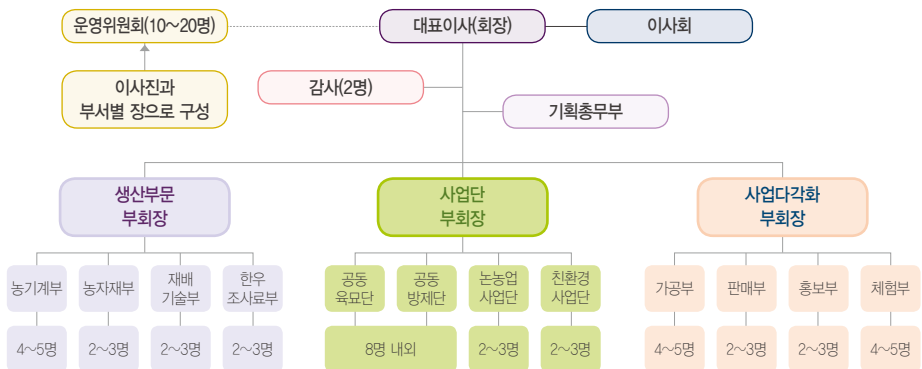
가. 조직체계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성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법인은 대부분 대표이사, 이사, 감사 정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들녘경영체의 경우도 농업법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농업법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경영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조직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들녘경영체별로 경영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들녘경영체는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법인에 출자한 조합원이외에 준조합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중요사안에 대한 의결을 하되, 이사진과 조직의 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내용, 추진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직간 책무를 철저히 하고, 조직의 임원진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능률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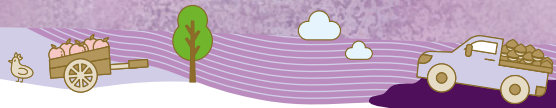
나. 조직의 사례와 각 부서별 역할

들녘경영체는 들녘 현장에서 경영체별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률적인 조직체계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조직도를 참고하여 각 들녘경영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맞게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6 들녘경영체 운영 조직도(안)



[물관리단]은 지역의 고령농, 영세소농 등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역들녘 전체가 참여하는 역할 부여



(1) 대표이사(회장)

대표이사는 농업법인 설립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우선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르고,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의결 방식 등으로 선출합니다. 대표이사는 들녘경영체를 총괄하며, 들녘경영체를 대표합니다.

(2) 이사회

이사는 농업법인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될 자격을 지니는 직책입니다.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법인 설립 시 발기인을 중심으로 이사를 구성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3) 감사

감사는 이사의 업무처리를 점검합니다. 대체로 2인 이상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4) 운영위원회

들녘경영체의 경우 조합원과 많은 준조합원이 모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이사만이 사업을 결정·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이사와 각 부서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부서별 업무현황을 협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5) 부회장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담당부서가 많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모든 사항을 총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성격 등에 따라 부서를 조직하고 업무분야에 따라 2~4개 부서 당 1명의 부회장을 두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부재시 수석부회장을 두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6) 기획총무부

기획총무부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들녘경영체의 전체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주요 입출금에 관한 재무 및 홍보활동 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들녘경영체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수록 기획총무부의 역할이 매우 커집니다.

(7) 농기계부

들녘경영체의 공동영농활동에서 농기계에 의한 농작업 추진방식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들녘경영체 운영에서 가장 많은 경영비가 소요되는 것 중의 하나가 농기계 관련 비용입니다. 농기계의 수리, 작업료 계상,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농기계부가 필요합니다. 농기계부에서는 농기계 작업의 편성, 농작업료 산정,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농기계 소유 농업인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이용에 의한 감가상각비 감축과 들녘 내에서 농작업의 단지화·집단화를 통한 작업효율성 등을 통해 농기계 관련비용 절감과 수익증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를 소유하지 못하여 고비용의 농기계 작업료가 부담이 되는 영세·고령농의 경우, 농기계부의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 작업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8) 농자재부

들녘경영체의 1개 경영체당 평균 200ha 규모의 농지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종자, 상토, 비료, 농약 등 많은 양의 농자재가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농자재 선택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여부와 소요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농자재부는 이들 다양한 농자재의 적정선택, 농자재 구입량과 구입처 등을 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9) 재배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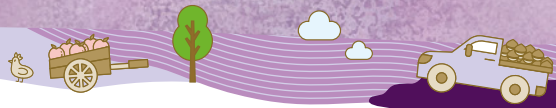
들녘경영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10가지 이상의 모델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들녘경영체 경우 재배기술부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GAP인증 쌀, 가공용 쌀, 수출용 쌀 등의 생산을 위한 다양한 생산매뉴얼을 개발하고 논 이모작 유형에는 답리작 작물의 선택과 재배기술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기타 작물의 경우에는 작물의 선택과 그 작물에 맞는 재배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으로 들녘경영체 참여 농업인의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합니다. 따라서, 재배기술부는 생산농산물의 매뉴얼 등을 총괄하여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의 중책을 담당합니다.

(10) 한우조사료부

논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수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답리작 확대, 밭 조사료 재배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다양화를 위한 한우사육 들녘경영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우조사료부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적정사료배합, 한우 고급육 생산 등의 시스템 구축을 담당합니다.

(11) 공동육묘단

공동육묘를 통해 육체노동부담을 덜고 양질의 모를 공급하는 동시에 육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육묘는 1년 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공동육묘는 일정기간 동안 많은 작업자가 필요하며, 일련의 벼농사 작업에서 육묘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공동육묘단은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적정 작업인력 수급, 적절한 육묘관리, 우량한 육묘 대량공급 시스템 구축을 담당합니다.



(12) 공동방제단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등을 활용한 공동방제는 고된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적기에 안정적인 방제를 도모하여 비용을 절감해줍니다. 공동방제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효율적으로 방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무인헬기는 관련 자격증이 요구되고, 광역방제기는 야간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광역방제기에 의한 공동방제의 경우는 야간작업을 동반하고 방제특성상 매일매일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몇 개의 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공동방제단은 공동방제기의 특성에 따른 방제일정 조정 등의 방제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합니다.

(13) 논농업사업단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 가격하락이 지속화되고 있어 논에 논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의 적정생산과 논 소득의 다양화를 위해 타작물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농업 사업단은 논에 경작하는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등 논의 경영 전반을 담당합니다.

(14) 친환경사업단

들녘경영체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경영체가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영체의 경우 조직에 친환경사업단을 조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친환경사업단은 친환경 쌀과 기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친환경 재배 기술, 친환경 인증,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15) 사업다각화 부문

들녘경영체의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은 많은 재정투자로 사업추진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많은 투자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양질의 농식품 개발, 철저한 판매전략 수립, 홍보활동 등에 전문성과 완성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가공부, 판매부, 홍보부, 체험부 등의 전문조직을 두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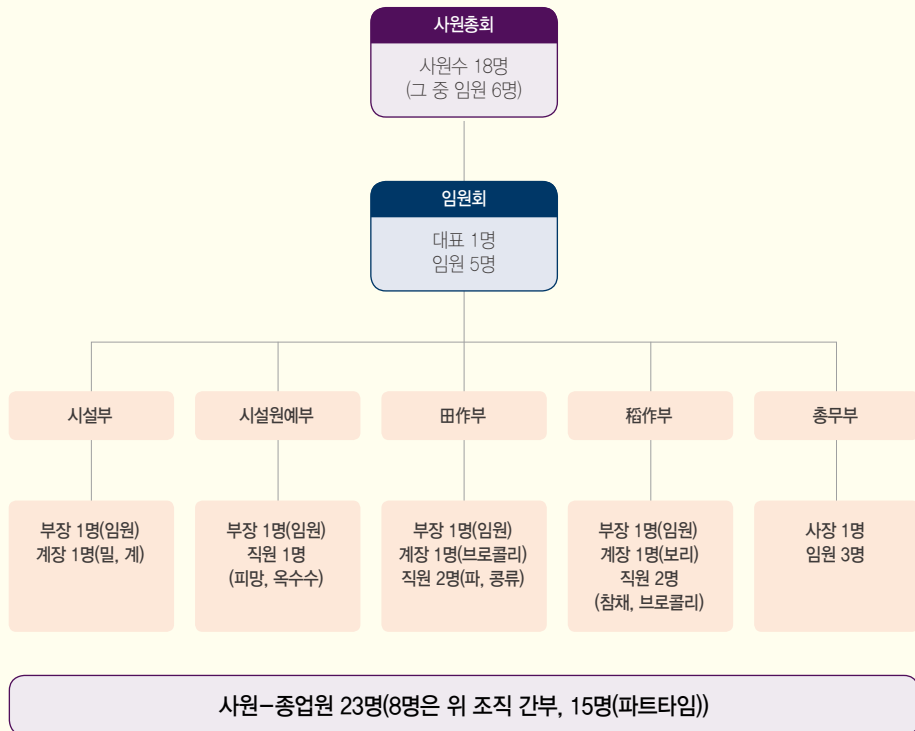
- ① 가공부: 사업다각화 사업계획에 따른 가공품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② 판매부: 생산된 가공품에 대해 적정가격 확보,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담당합니다.
- ③ 홍보부: 생산된 가공품에 대해 다양한 홍보 등 판매촉진 활동을 담당합니다.
- ④ 체험부: 원료곡의 생산과정, 가공품의 생산과정, 주변의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촉진 효과 이상의 목적을 갖고 사업의 한 축으로 체험을 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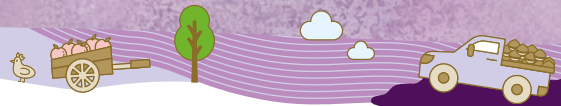
[사례] 일본 북해도 지역 유한회사 호나미(ほなみ)

일본 북해도 지역 내 농업생산법인의 하나인 호나미 농업생산법인은 2002년 2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호나미 농업생산법인은 자본금 995만円(약 1억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구성원은 16명으로 출발하여 현재 18명으로 확대되었고 18명 구성원 중에서 6명이 임원을 맡고 있으며, 부서별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한편 파트타임 근로자는 2002년 12명에서 2014년에 30명으로 증가되어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영면적은 2002년, 창립 당시 164ha로 시작하여 2014년에 237ha로 확대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쌀이 176ha, 밀이 31ha, 콩이 4ha, 사탕무가 7ha, 대파는 3ha, 팔은 1ha, 기타 작물이 15ha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호나미 농업생산법인은 “창의공부노력(創意工夫努力)을 한다, 조화와 비약을 도모한다, 공존공영을 도모한다.”는 세 가지 모토 아래 다섯 개의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부서의 장은 임원진을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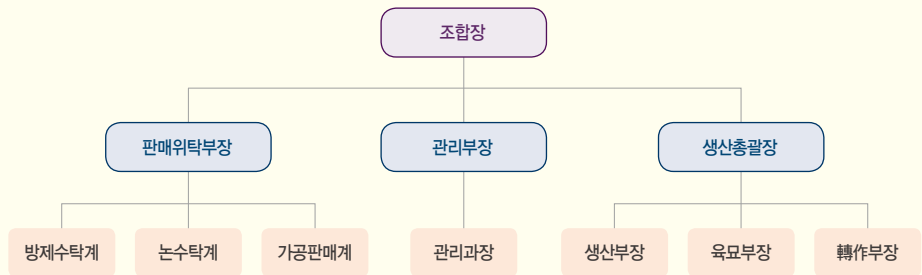


[사례] 일본 아오모리현 히라카와시 타키모토 쌀생산조합(滝本 水稲生産組合)

타키모토 쌀생산조합은 1971년 임의조합으로 설립된 이후, 2003년 10월에 공식 설립된 조합입니다. 이사 10명, 감사 2명, 조합원 153명, 직원 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쌀이 103ha, 콩이 35ha, 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콩 가공품 6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인 농작업 대행과 관련하여, 농기계는 트랙터 8대, 이앙기 8조 7대와 6조 3대, 콩 범용콤바인 2대, 무인헬기 4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 수탁 작업은 육묘, 경운·정지, 이앙, 논두렁제초, 방제, 가공작업이며, 수확작업은 다른 생산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타키모토 쌀생산조합의 조직운영은 관리부, 생산총괄, 판매위탁부로 크게 구분되며 생산총괄에는 생산부, 육묘부, 전직(轉作)부로 나누고, 판매위탁부는 방제수탁계, 논수탁계, 가공판매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타키모토 쌀생산조합(滝本 水稲生産組合) 안내 팸플릿



[6-2] 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들녘경영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농업법인을 구성하는 조합원,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 농업인이 있고, 외부에는 별도의 들녘경영체, 행정기관, 농업기술센터, 농협, 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들녘경영체의 조직화가 원활히 진행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발생이 최소화되어, 들녘경영체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들녘경영체 소통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들녘경영체 내부에서의 소통전략

들녘경영체 구성 농업인은 2종류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들녘경영체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농업법인을 구성하는 조합원입니다. 법인 구성원에는 발기인에 등록된 이사·감사와 일반출자자인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들녘경영체 사업에 참여하는 들녘 내 일반 농업인입니다.

(1) 들녘경영체 내 임원진 간 소통 및 임원진과 조합원 간 소통

들녘경영체 내부임원들 간의 소통은 사업추진 방향에 맞는 조직체계 구성을 바탕으로 임원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역할에 따라 업무추진 시 협의 및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원진들 스스로 들녘경영체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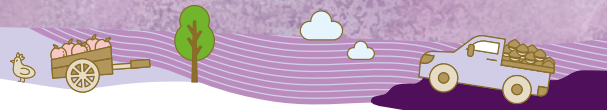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출자자인 조합원도 조직에 잘 융화되어 들녘경영체의 다양한 사업을 이해하고 조직에서 역할을 담당하며 임원과 조합원간 소통을 이끌어야 합니다. 구성원 간의 이 같은 소통을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를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2) 들녘경영체내 임원진과 참여농가 간 소통

들녘경영체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준조합원인 참여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설·장비를 공동이용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집단화(단지화)를 이루고 농기계를 원활히 공동이용하기 위해서는 참여농가들의 의지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협동이 필요합니다.

임원진과 참여농가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농가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임원진의 활동과 운영비전을 공유하여 임원진과 사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참여농가에게 많은 수익을 환원함으로써 참여농가의 사업만족과 애정이 커지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이와 같이 임원과 참여농가간의 소통이 활발하고 참여농가로 수익이 잘 환원되면 농업법인의 출자가 확대되고 들녘경영체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나. 들녘경영체 외부와의 소통전략

들녘경영체를 둘러싼 외부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우선 주변의 또 다른 들녘경영체,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등의 조직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들녘경영체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들녘경영체 사업과 관련된 행정기관,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유통업체, 가공업체 등입니다.

(1) 들녘경영체간의 소통

들녘경영체간의 소통은 주변의 들녘경영체,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시·군 지부와 시·도 지회,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군 내 들녘경영체 혹은 주변의 들녘경영체와 상호교류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과 협조를 이루고 사업발전 모델을 공유하거나 공동구매·판매활동 등으로 상호하면 들녘경영체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들녘경영체 전국단위 관계단체(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등)에 가입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들녘경영체의 건의사항을 관계기관에 효과적으로 제시하거나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안정적인 원할한 농산물 수급 달성 및 들녘경영체 이익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조직과의 소통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등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외부기관 혹은 다른 조직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외부기관·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행정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농식품 유통업체, 가공업체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생산, 가공, 판매 등을 가속화하여 들녘경영체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과의 소통은, 시·군청 내의 농업행정부서,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 등과의 소통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시·군의 농업행정조직에서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쌀과 식량 관련 정책의 추진, 예산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 연구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사업, GAP인증, 친환경인증 등 다양한 농정시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산물의 GAP인증, 친환경인증을 추진하는 들녘경영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행정기관입니다.

농협과의 소통도 필요합니다. 시·군 단위에는 지역농협과 원예농협, 축협 등이 있습니다. 농협은 경제사업, RPC(미국중합처리장) 등 유통·판매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들녘경영체는 RPC와 연계를 통해서 공동수매를 추진하고 RPC와 계약재배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기에 RPC의 운영방식 등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농산물 가공에 관심이 많은 경영체는 지역 내 혹은 지역 밖의 농식품 가공업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부가가치 증대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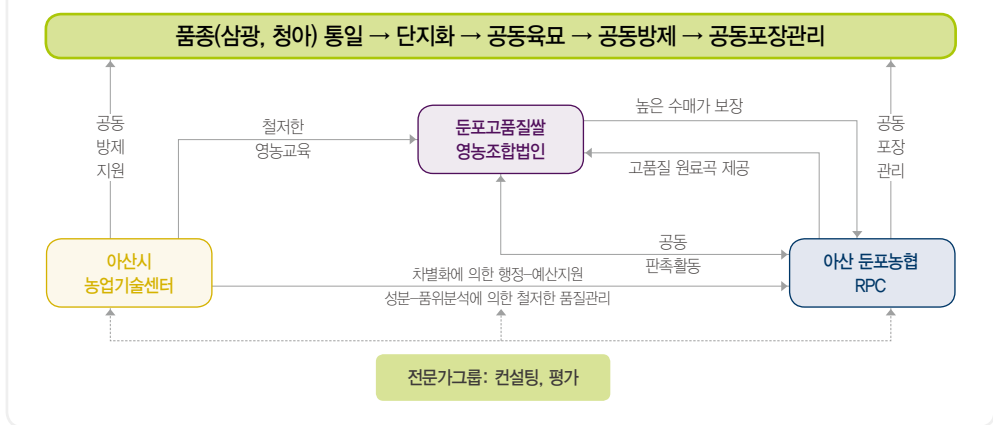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유통업체와의 소통은, 특히 사업다각화를 목표로 하는 들녘경영체의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생산된 농식품을 판매는 들녘경영체 운영의 성공을 좌우하며 상품의 특성상 판매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운영이 부실한 업체와 거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식품 유통업체 관계형성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례] 행정-들녘경영체-RPC 연계: 둔포고품질쌀 영농조합법인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소재한 둔포고품질쌀 영농조합법인의 연계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들녘경영체는 논을 단지화하여 품종을 통일하고 공동육묘-공동방제-공동수매를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 대한 철저한 재배기술지도와 사업지원,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둔포농협 RPC에서는 고품질 원료곡의 수매-건조-저장 및 유통을 담당하며 아산시 브랜드인 “아산 맑은 쌀”에 대한 철저한 마케팅관리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들녘경영체-농업기술센터-둔포농협 RPC의 연계는 아산시 브랜드쌀인 “아산 맑은 쌀”생산단지를 구성과 공동포장관리를 실시, 둔포농협의 철저한 품위검사 속에서 연계된 세 조직의 판매처에 대한 공동 판매촉진 활동으로 성과 제고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 7 아산 둔포고품질쌀 영농조합법인-농업기술센터-둔포농협RPC의 상호협조체계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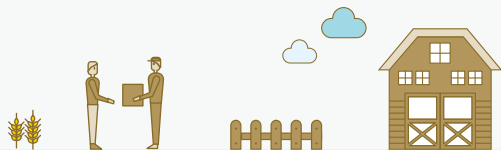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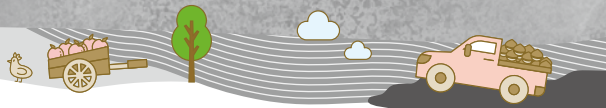


〈별첨 1〉 들녘경영체가 6차 산업화를 추진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무엇인가?

자료 통계청, [2015년 농가경제통계], 2016. / 통계청, [2015년 농가경제 지침서], 2016.

- 통계청에서는 농가소득은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농업소득(1차산업) ② 겸업소득(2차산업) ③ 사업외소득(3차산업) ④ 이전소득 ⑤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② 겸업소득(2차산업) ③ 사업 외 소득(3차산업)을 합하여 농업 외 소득이라고 합니다.
- 각 소득은 어디에서 얻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① 농업소득(농산물 생산소득)은 농가의 당해년도 농업생산 활동의 최종성가로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로서 1차 산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뺀 금액입니다.
 - 농업총수입은 농가가 당해년도 농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을 가리킵니다. 농산물 판매수입, 생산물 중 자가소비 평가액, 대동식물 증식액, 재고농산물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농업경영비는 농업 총수입을 얻기 위해 농업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입니다. 농업지출현금, 현물지출 평가액, 대농기구 등 농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재고생산자재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자가생산하여 재투입한 중간 생산물은 농업경영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② 겸업소득(2차산업 소득)은 농가가 농업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임업 및 어업, 농산물 가공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 겸업수입 등에서 이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제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 예를 들면, 들녘경영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1차 가공이나 2차 가공을 하여 판매(농산물가공업) 해서 얻어진 수입에서 가공과정에서 파생되는 비용을 뺀 소득을 겸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 외 소득(3차산업 소득)은 농가가 사업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서 농가 가구원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노임, 급료 등의 소득과 그 외의 임대료, 배당이자 등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이런 소득을 얻기 위해 투입되는 제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 예를 들면, 들녘경영체에서 지역축제, 농가체험 등의 활동 시 행사 및 체험의 진행 등에 참여하고 하루 일당이나 월급을 받을 경우 사업 외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전소득은 농가가 비경제적인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공적 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⑤ 비경상소득은 경조사수입, 사고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 가구로부터 얻은 수입입니다.





참고 농업외소득(겸업소득 + 사업외소득)의 수입내용

항목		내용	
겸업 수입	임업	• 산나물, 들나물, 산야초, 나뭇가지, 버섯류, 밤, 잣, 호도, 도토리, 은행, 산딸기, 장작, 산토끼 등(재배용 밤, 호두, 대추, 잣, 은행 포함)	
	어업	• 일체의 수산물 수입(해수면과 내수면 포함)	
	농산물가공업	• 6차 산업화에서 2차산업을 의미함 • 자가생산 및 구입한 농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한 일체의 수입(콩나물, 두부, 떡, 장류, 삼배, 과일즙, 흑염소, 개소주 등의 가공품)	
	제조업	• 농산물 가공을 제외한 제조업 수입 일체	
	건설업	• 건설업과 관련된 일체의 수입	
	농업서비스업	• 단일작업, 구간작업 및 전체작업을 대행받아 작업한 수입, 착유, 제분, 부화, 가축교배 등의 서비스업 수입 등 농업부대 서비스 수입	
	음식숙박업	• 식당 및 숙박업소 관련 수입	
	도소매업	• 다단계 판매수입 등 도소매업 수입	
기타 겸업		• 이상 소개한 겸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관련 수입(농업부문 제외)	
사업외 수입	급여 수입	농업외임금	• 농사이외의 일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현금 및 현물평가액
		농업임금	• 다른집 농사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현금 및 급여물의 평가액
	자본 수입	농지임대료	• 논, 밭, 수원지 등의 농지 임대료 수입
		기타	• 이자 및 배당 수입: 주식, 계, 보험, 마을금고, 은행 등의 출자배당금 및 예금, 대여금 이자 • 유가증권 매매차익(원금 제외) • 기타 임대료 수입: 시설물, 대농구, 역축, 대지 등의 임대료 수입

참고 이전수입과 비경상수입의 구성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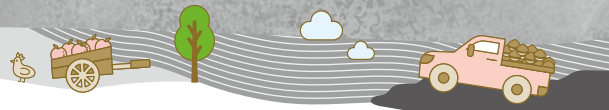
항목		내용	
이전 수입	공적 보조금	농업	• 농농업 고정직불금 및 농기계보조, 농약, 비료, 친환경보조 등 농업과 관련한 정부의 보조금
		농업외	• 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국민, 농어민연금 등 연금법에 의해 매월 지급받는 일체의 연금) • 실업수당 • 산업재해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금 등) • 기초 노령연금, 영세민 생활보조금, 참전명예수당, 노인교통수당, 노인 의료비지원, 장애인보조금 등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받는 경상적 또는 일정기간 동안받는 일체의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 출타가족 또는 친인척 등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보조금	
비경상수입		•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또는 타 가구로부터 얻은 수입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 퇴직일시금 / 사고보상금(손해배상금, 재해보상금, 피해보상금 등) / 신문지 잡지, 가전제품, 자기보유귀금속, 빈병, 자기인분뇨 등 판매수입(농업부문 제외) /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교제 등에 의해 받은 금액 / 세금환불 받은 금액, 연금반환 일시금, 정부-공공기관-이웃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비경상적 보조금 / 정부나 기타기관으로부터 농촌조사를 하고 받은 사례금 및 물품, 표본작물 배상금 포함 / 정부나 기타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받은 사례금 또는 물품, 경조금 답례품 등	



〈별첨 2〉 농산물 생산비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자료 통계청, [2015년 농산물생산비통계], 2016. 4. / 통계청, [2015년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지침서], 2016.

- 들녘경영체의 운영의 기본목적은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 농산물 생산비를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대부분 농산물 생산비는 아래의 생산비목으로 산출합니다.
- 통계청은 농산물 생산비를 크게 14가지 비목으로 구분합니다.
 - ① 종묘비 ② 비료비 ③ 농약비 ④ 수도광열비 ⑤ 기타재료비 ⑥ 자동차비 ⑦ 농구비 ⑧ 영농시설비 ⑨ 노동비 ⑩ 위탁영농비 ⑪ 생산관리비 ⑫ 기타 비용 ⑬ 토지용역비 ⑭ 자본용역비
- 각 비목의 소득은 어떻게 어디에서 얻어지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① 종묘비
 - 종묘비는 해당 작물 생산에 투입된 종자 및 종묘비용입니다.
 - 자가 종자도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 ② 비료비
 - 비료비는 해당작물 생산에 투입된 무기질비료(질소질비료, 복합비료, 토양개량제 등) 및 유기질 비료 등의 비용입니다.
 - ③ 농약비
 - 농약비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 투입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전착제 등의 비용입니다.
 - ④ 수도광열비
 - 해당 작물의 생산에 투입된 수도로, 농기계 등의 가동에 사용한 유류비(경유, 휘발류, 등유 등)와 농사용 전기료 등입니다.
 - ⑤ 기타재료비
 - 기타재료비는 종자, 비료, 농업용약제 및 수도광열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비로 PP포대, 비닐, 부직포, 지주, 친환경자재, 골재, 묘상용 상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⑥ 자동차비
 - 자동차비는 해당 작물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임차료 등입니다.
 - ⑦ 농구비
 - 농구비는 해당 작물 생산에 투입된 각종 농기계의 비용으로 농기계의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임차료(농기구 자체를 임차하여 농가가 사용하는 것을 의미), 축력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농구의 기준은 20만원 이상인 농기구로 하고 있습니다.
 - * 대농구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계청의 기준별 내용연수는 동력경운기(6년), 보행·승용관리기(5년), 트랙터(8년), 파종기(5년), 이앙기(5년), 콤바인(5년), 방제기(5년), 건조기(8년), 축조시비기(5년), 제초기(6년), 육묘파종기(5년), 비료살포기(6년), 화물트럭(6년), 소형승합차(6년), 대부분의 트랙터부착 작업기(6년), 도정기(10년), 배일러(6년), 집조기(6년), 육묘상자(6년), 육묘장(통상 10년) 등입니다.
 - * 대농구의 감가상각비도 토지용역비와 같이 이용 농작물의 사용비율로 계산합니다.



⑧ 영농시설비

- 영농시설비는 해당 작물 생산에 투입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비용으로 영농시설의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임차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⑨ 노동비

- 노동비는 해당 작물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평가액으로서 자가 노동비와 고용노동비를 포함한 비용입니다.

- 여기서 자가 노동비는 전체 생산비에 포함되지만, 실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 노동비는 농업노동을 직접 고용하여 지불한 비용을 의미 합니다.

- 자가노동비는 작업에 투입되는 가족 노동력의 노동 시간에 대한 비용 평가로, 전국 제조업, 운수업 5~29인 이하 사업체에서 일하는 남녀 동일 연간 월평균 임금으로 계상합니다.

⑩ 위탁영농비

- 위탁영농비는 해당작물 생산과정 중 일부작업, 일정구간을 남에게 위탁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 만약 고령농가가 농기계 소유농가에 경운·정지, 이앙, 수확작업을 부탁하면 작업이 끝나고 지불하는 비용이 이 위탁영농비에 포함됩니다.

⑪ 생산관리비

- 생산관리비는 해당 작물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가구, 컴퓨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프린터, 기타 등의 감가상각비와 그 수리유지비, 임차료, 협회 및 집회참가비, 인터넷사용료, 통신비, 사무용품비 등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⑫ 기타 비용

- 기타 비용은 해당작물 생산과 관련된 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⑬ 토지용역비

- 해당작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에 대한 대가입니다.

- 임차토지에 대해서는 실제 농가가 지주에게 지불하는 임차비용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면 A농가가 B지주에게 1,200평당 논 임차료를 100만원 주었다면 100만원이 토지용역비입니다.

- 자가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임차료를 적용하여 평가한 비용입니다.

* 자기 논에 쌀을 생산하는 경우는 같은 마을에서 일반적으로 임차료로 지불하는 액수만큼 토지용역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A농가가 자기 논에서 쌀을 재배하고 있을 경우, 같은 마을 B농가가 A농가 소유 논과 유사한 논을 C지주에게 1200평당 논 임차료를 100만원주고 빌려서 벼 재배를 할 경우에 A농가의 논의 토지용역비는 100만원으로 계상됩니다.

- 벼만 재배할 경우 동일 논에 쌀 재배만 할 경우 100만원을 지불한 논의 경우는 쌀이 부담하는 토지용역비는 지불한 100만원 전체를 쌀 토지용역비로 계산합니다.

- 벼와 이모작 보리를 재배할 경우 만약 1,200평의 논에다 벼를 심고 이모작으로 보리를 심는다면 100만원의 임차료를 쌀과 보리로 나누어 계상 합니다.

* 논 1,200평에서 쌀 총수입이 400만원, 보리 총수입이 200만원의 총수입을 얻었을 경우 논에서 총 600만원의 총수입을 얻은 것입니다. 이 경우, 총수입 600만원 중 쌀이 400만원의 전체수입의 66.7%, 보리가 400만원으로 33.3%입니다. 그래서 쌀이 부담하는 토지용역비는 임차료 100만원의 66.7%인 66,700원이고, 보리 토지용역비는 33,300원이 됩니다.

⑭ 자본용역비

- 자본용역비는 해당작물 생산을 위해 기간 중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입니다.
- 자본용역비는 유동자본용역비와 고정자본용역비로 구분합니다.

* 유동자본용역비는 투입된 자본 중에서 1회사용으로 없어지는 자본(예를 들면 종자, 비료, 농약, 수도광열비, 기타재료 등)에 소요된 비용의 이자비용입니다.

* 고정자본용역비는 투입된 자본 중에서 고정자본(대농구와 영농시설물, 구축물 등비유동자본)의 현재가격에 농구별 또는 시설물별 작물별로 비용부담률을 산출한 후에 매년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생산비 중에서 경영비는 실제 지불한 비용으로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 경영비 항목은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수도광열비, 기타재료비, 수리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고용노동비, 위탁영농비, 생산관리비, 기타비용, 임차토지용역비로 구성됩니다.
 - 즉 전체 생산비에서 자가노동비 자가토지용역비 및 자본용역비를 제외한 비용을 가리킵니다.

참고 쌀 생산비 구성항목

구분	내용	생산비		경영비
		직접	간접	
종묘비	해당작물 생산에 투입된 종자 및 종묘비용(자급종자 포함)	○		○
비료비	해당작물 생산에 투입된 무기질비료 및 유기질 비료 등의 비용	○		○
농약비	병해충방제를 위해 투입된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이 비용	○		○
수도광열비	해당작물의 생산과 관련된 농기계 등의 가동에 사용한 유류, 전기료 등	○		○
기타재료비	종자, 비료, 농업용약제 및 영농광열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비로 PP포대, 비닐, 골재, 묘상용상토 등이 해당	○		○
수리비 (水利費)	해당작물에 생산에 투입된 수리시설의 비용으로 수리시설의 감가상각비, 수선비, 임차료 등	○		○
농구비	해당작물에 생산에 투입된 각종 농기계의 비용으로 농기계의 감가상각비, 수선비, 임차료 등	○		○
영농시설비	해당작물에 생산에 투입된 농업용시설물에 대한 비용으로 영농시설의 감가상각비, 수선비, 임차료, 축력비 등	○		○
노동비	해당작물에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자가노동비와 고용노동비를 포함	○		
		자가노동		○
고용노동		○		○
위탁영농비	해당작물 생산과정 중 일부작업, 일정구간을 남에게 위탁한 경우의 비용	○		○
생산관리비	해당작물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기구, 협회비, 사무용품, 통신비, 기획관리 비용 등	○		○
기타비용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조세, 생산관리비 등	○		○
토지용역비	해당작물 생산을 위해 사용된 토지에 대한 대가로서, 임차토지에 대해서는 실제 지불한 임차비용을 적용하고, 자가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임차료를 적용하여 평가한 비용으로 즉 地代를 의미함		△	
		자가토지		○
임차토지			△	○
자본용역비	해당작물 생산을 위해 기간중 투입처분한 자본에 대한 이자비용		△	○

들녘경영체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



들녘경영체 설명서

들녘경영체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편집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자료제공·감수 전북대학교 조가옥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기 획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디자인 (주)메이커뮤니케이션 02.761.8340

www.mafra.go.kr



들녘경영체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